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 요청

형사사법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이 보유하고 있는 고용 또는 인허가와 관련된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특별히 지문 채취 방식으로 범죄경력 신원 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주(州)법, 연방법, 또는 뉴욕 주의 마을, 타운, 시 또는 카운티의 지방법이 실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요청하는 기관: _____

담당자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1. 요청의 성격(적용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

- 구직/인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용 지문 제출
- 범죄경력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방법 법안에 대한 법률 심사
- 통합 사법정보 포털사이트(Integrated Justice Portal) eJusticeNY 를 통하여 범죄경력에 접근
- 치안담당관의 제한적 접근 치안담당관은 질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DCJS 가 보유하고 있는 수배 정보 및 실종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주 경찰서의 허가에 따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의 사진 미포함 면허 및 등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권한을 신청하기 위하여, 치안담당관을 고용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관 또는 단체가 수립한 조례 또는 법령

기관/단체의 치안담당관이 체포권을 지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 또는 법령

미국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ules, CFR) 제 28 편 제 20.3(g)(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단체/기관이 형사사법기관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CFR 제 28 편 제 20.3(b)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치안 담당관이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형사사법 행정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관의 서명이 포함된 기관/단체의 레터헤드 진술서

2. 범죄경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주 법령이나 지방 법령이나 또는 연방 법령이나 연방 규정(해당 법률 또는 규정을 설명하고 첨부할 것):

3.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이 보유하고 있는 연방 범죄경력 기록 정보가 요구되는가? 이러한 사항이 지방 법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 예 • 아니요

“예”라고 답한 경우 FBI가 보유하고 있는 연방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주 법령 또는 연방법령 또는 연방 규정을 설명하고 사본을 첨부합니다.

참고: 지방 정부는 해당 기관이 범죄자가 아닌 신청자의 지문에 대하여 DCJS에 질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있어 충분한, 아래의 지방 법률 초안상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 법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문 채취가 요구되는 특정 면허의 유형/직업명
- 지문 및 여하한 신청 수수료가 DCJS가 규정된 양식과 방법으로 DCJS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
- 범죄경력 기록 정보의 조회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직원의 직책
- 장애의 지원자가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장애의 지원자의 그러한 면허에 대한 적합성과 관련하여 뉴욕 주 교정법(Correction Law) 제 701-703-b 조, 제 751-753 조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 교정법 제 701-703-b 조는 장애사항에 대한 경감 증명서(certificate of relief from disability) 및 선행증(certificate of good conduct)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 751-753 조는 1 개 이상의 형사 범죄 및 채용 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과거에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의 면허 교부 및 고용 장려에 대한 뉴욕 공공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주 국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에 해당 지방 법률을 접수한 증빙이 지방 법률에 대한 고려사항의 요청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방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기 이전에 기관 또는 단체가 지방 법률을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 증빙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여하한 질의 사항은 dcjslegalservices@dcjs.ny.gov 또는 (518)457-8413 으로 DCJS 법무 서비스국(DCJS Office of Legal Services)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